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교육관 명칭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내실있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위탁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나. 교육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 다. 교육관 사무 위탁단체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탄소제로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을 “탄소제로교육관(이하 “교육관”)”으로, “남통동 200-2번지 일원”을 “금오산로 336-97(남통동)”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또는 단체에

체험교육관”을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교육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중 “체험교육관”을 각각 “교육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u>기후변화체험교육관</u>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탄소제로교육관</u> ----- -----.
제2조(위치) 구미시 <u>기후변화체험교육관</u> (이하 " <u>체험교육관</u> "이라 한다)은 구미시 <u>남통동 200-2번지 일원</u> 에 둔다.	제2조(위치) ----- <u>탄소제로교육관</u> (이하 " <u>교육관</u> "----- ----- <u>금오산로 336-97(남통동)</u> -----.
제3조(업무 및 기능) <u>체험교육관</u> 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3조(업무 및 기능) <u>교육관</u> -----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료 등) <u>체험교육관</u> 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등) <u>교육관</u> ----- -----. -----.
제5조(관람시간) ① <u>체험교육관</u> 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5조(관람시간) ① <u>교육관</u>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휴관) ① <u>체험교육관</u> 의 휴	제6조(휴관) ① <u>교육관</u> -----

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략)
- ② (생략)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교육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체험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 ② (생략)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교육관 내 전시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의 교육·홍보·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

1. (현행과 같음)
2. 교육관-----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의 제한) -----

----- 교육관 -----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
교육관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변상책임) -----
----- 교육관 -----

-----.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법인 또는 단체에 <u>체험교육관</u>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u>교육관</u>--.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u>체험교육관</u>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u>체험교육관</u>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지원) ----- <u>교육관</u>----- ----- -- <u>교육관</u>-----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체험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01.19)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구성요소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기본으로 한다.

나.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2016년 321,056천원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1,704,22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천원)

구 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 출	321,056	330,687	340,607	350,825	361,050	1,704,225

☞ 2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321,056	330,687	340,607	350,825	361,050	1,704,225
기 타						
합 계	321,056	330,687	340,607	350,825	361,050	1,704,225

5. 부대의견

세출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 변경시 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안전과 전유향
연 락 처	054-480-528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시설운영 및 관리, 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원가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노무비 — 178,537 천원

○ 행정업무 : 27,443 천원 × 1 명 = 27,443 천원

21,954 천원 × 1 명 = 21,954 천원

○ 시설관리 : 37,666 천원 × 1 명 = 37,666 천원

○ 체험관 안내 및 해설 : 21,954 천원 × 2 명 = 43,908 천원

○ 환경미화원 : 23,783 천원 × 2 명 = 47,566 천원

※ 최저임금 및 제조부문 노임단가 중 전기정비원 임금을 근거로 산출

2. 경 비 — 127,231 천원

- 전력비 : 시설규모와 예상 수요를 기초로 산출

일반용전력(을)—고압A $4,530,800\text{원} \times 12\text{월} = 54,370$ 천원

- 상하수도,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 10,266 천원

- 감가상각비, 보험료, 기타경비 등 : 29,595 천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 33,000 천원

3. 일반관리비 — 15,288 천원

※ 용역원가의 5% 적용

소관 실·과		환경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이 재 익
	담 당 자	전 유 향 (480-5287)